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4. 9. 30. (총 6 쪽)

보 도 자 료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사법 정의 바로 세워라!

총수일가가 이득 보는 동안 피해는 삼성그룹과 국민이 떠안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인정사실·행정법원의 분식회계 판단

수용해야

자본시장 질서 뒤흔들고 온 국민에게 피해 입힌 행위, 엄중한 처벌

필요

일시 장소 : 2024. 9. 30. (월) 13:30, 서울고등법원 앞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9/30) 오후 1시 30분,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사법 정의 바로 세워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합병 비율은 여러 불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에게 유리하도록 설정되었고,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해외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가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해 한국 정부가 각각 약 1,500억 원, 800억 원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구)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도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어 얼마 전인 9월 13일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3.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삼성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재용 회장이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뇌물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합병 관련자들도 이미 뇌물죄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들로 징역을 선고 받았던 만큼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4. 그러나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징역형을 피하게 해주는 소위 '3-5물'을 이재용 회장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한 초석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는데, 1심 재판부는 그보다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를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판단하는 등 피고인 전원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과 충돌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5. 그런데 지난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2016년에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하여 형사소송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이상 형사소송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과 충돌하는 판단으로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고, 항소심 재판부에게 대법원의 인정사실과 행정법원의 분식회계 판단을 수용하여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근간을 뒤흔들고 온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과 국고에 큰 손실을 입히고도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불법합병 관련자들을 이번에도 봐준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사법 정의는 또 다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발언문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사법 정의 바로 세워라!
- 일시 장소 : 2024. 9. 30.(월) 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앞(서초동 법원 삼거리)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발언 순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구호제창 및 법원으로 이동, 재판 방청

▣ 첨부자료2. 발언문

1.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기술자들의 법, 정의의 법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법이 있다. 그 중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법은 ‘정의의 법’이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의 영어 명칭은 ‘정의부’(Department of Justice)이고 미국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정의’(Justice) 그 자체로 부른다.

그러나 세상에는 정의의 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가장 정의로부터 거리가 먼 ‘기술자들의 법’을 더 자주 만날 수도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서 서커스를 하고, 논리가 궁하면 시효 만료와 당사자 적격을 꺼내 들고, 정급하면 증거수집(채증)의 위법성도 마음대로 끌어낸다. 이도저도 안 통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는 형량을 엇장수 맘대로 줄이는 작량감경이다. 물론 이것도 안 통할 때는 특별사면이라는 만병통치약도 있다.

기술자들의 법은 ‘방귀깨나 끼는’ 힘센 사람들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벌총수 관련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의는 실종되고 법기술자들의 알쌍한 테크닉들만 난무하는 아사리판을 목도하는 것이다. 이제는 국룰이 되어 버린 ‘3+5의 법칙’,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재판에서 갑자기 등장한 ‘교정적 사법’ 이론, 그리고 삼성 부당합병 형사소송에서 등장한 증거수집의 위법성 논란부터 수많은 남은 증거를 앞에 놓고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판사 혼자만의 비뚤어진 신념까지 법원은 종종 정의의 법보다, 아니 그냥 평범한 법보다, 기술자들의 법을 숭상해 왔다.

이제는 법원이 바뀌어야 한다. 판사는 선부른 기술자의 논리를 내세우거나, 얼마 후에 마주해야 할 자신의 퇴직 후 생활보다 정의를 숭상해야 한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정당한 법원칙을 ‘힘센 사람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무조건적인 면책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 부당합병 형사소송 2심 재판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2015년 11월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 0.35)은 누가 봐도 이재용VC의 회장 승계를 위한 불공정한 비율이었고 당시 여의도에서는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그룹 전체가 뛰었다.

이미 그들의 불법성은 2022년 4월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다.

문형표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매수가격도 매우 낮았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당연히 이 상황 알고 개입한 비열한 사냥꾼 엘리엇에게 정부의 배상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 사이 회장 승계는 확정되었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엄청나게 커졌다.

2016년 상장 당시 시총 **9조**, 상장가 **13만5천원**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 **74조**, 주가는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로 등극했다.

국가는 비열한 사모펀드에게 돈도 물어줘야 하고 국격도 손상받았다.

힘없는 공직자들은 감방에 가는 등 온갖 고초를 당했다.

국민연금이 잃은 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라고 **2심**도 무죄를 기대하는가.

책임져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는 왜 만들었는가.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으로 고통받는 소액주주들이 많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 얼마되지 않는 돈, 정부와 국민연금에 갚을 것은 갚고 서초동 이곳에서의 문제는 정리하기를 제안한다.

경영에 집중하기를 기대한다.

3.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2015. 7. 17.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습니다. 이 합병은 전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실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은 "물산-모직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 미전실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만 믿어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할 사실관계입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합병시너지를 얻기 위해 합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일모직과의 합병 시너지는 전혀 없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하면 매출액이 **2020년까지 60조원**으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매출은 **42조원**이었습니다. 합병 전 두 회사의 예상매출액 합계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냥 건설부문, 상사부문, 패션부문, 리조트부문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합니다. 삼성물산도 "합병시너지로 이리이러한 점이 좋아졌다"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를 제대로 공시조차 하지 않다가, 막상 콜옵션

부채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갑자기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회계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고, 그래서 에버랜드의 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린 문제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회계연도 공시를 잘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 시너지를 위해 합병을 한 것이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재용 회장의 거짓말은 바로잡혀야 합니다. 국민과 주주를 속이면서 진행되었던 불법합병, 지배력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까지 바쳐가며 성사시켰던 뇌물합병에 대해서 응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매섭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